

소홀히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바 집행기관에서는 공급자 의무준수여부와 가스안전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부설시공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은데 도시가스관이 규정보다 낮게 매설되거나 배관하부와 상부에 압력과 충격방지를 위해 30cm두께로 깔게되어 있는 모래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부설시공을 할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재삼 인식하여 배관매설기준에 의한 적정시공여부등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여 규정에 의한 시공이 되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전의사항입니다. 지하에 거미줄처럼 깔린 도시가스배관이 부설공사 또는 노후화되어 가스가 샐 경우 이번 사고와 같은 대폭발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우리 구에도 가스배관뿐만 아니라 전력선 통신관로 등의 지하매설물에 있어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마련되지 않아 종합적인 지하도면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굴착공사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전산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제가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전의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책임한 내용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元泰 洪吉杓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토대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처리요구 사항 및 전의사항을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로서 동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서 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은 조선간의 기온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2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時 14分 散會)

○出席議員(28人)

金 元 泰	黃 星 煥	秦 植	熙 朴	太 緒
宋 潤 錫	李 鍾 賢	煥 萬 恵	柱 奉	祚 衡
李 天 握	沈 洪 性	煥 惠 煥	李 金	一 烈
具 又 石	鄭 然 宇	烈 相 東	李 洪	泌 构
沈 輽 稕	金 曜 晖	正 東 正	金 吉	顯 顯
鄭 然 宇	尹 求	正 東 正	李 洪	
金 東 仁	尹 權	正 五	金 裕	
李 奎				

○出席公務員

副 區 處 長	金 賢	鍾 龍
總 務 局 長	梁 石	寶 實
財 務 局 長	文 忠	汝 汝
市 民 局 長	尹 丙	翼
都 市 整 備 局 長	孫 時	
總 務 課 長	李 春	基
企劃豫算課長	李 殷	圭

(參照)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
계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95. 4. 12.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5. 4. 7. 마포

구청장

나. 회부일자 : '95. 4. 7.

다. 상정일자 : 제2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95. 4. 12.) 상정, 질의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춘기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지원금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안 제3조)
- 세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및 그 수익금으로 함(안 제4조)
-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함(안 제5조)
-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가능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박관수 전문위원)

본 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기금에서 당인리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그 수익금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입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특별회계 세입재원인 지원금이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될 것인지 그 실효성에 대하여는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황태식 위원) : 지원자금은 어디서 충당되며 어디에 쓰이나?
- 답변요지(이춘기 총무과장) : 한국전력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지출함.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장) : 지금까지의 지원금은 어떻게 관리 했나?
- 답변요지(이춘기 총무과장) :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6,470만 5천원을 세입세출 의원금으로 관리하여 상수동 및 합정동의 발전소 주변 주민의 복지지원 사업비로 지출 되었음.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장) : 발전소 폐열은 지역난방으로 이용되고 있나?
- 답변요지(이춘기 총무과장) : 반포 및 여의도 지역난방과 한강 고수부지 온수수영장 운영에 이용되고 있음.
- 질의요지(이봉형 위원) : 지원금은 요구에 의하여 지원되나?
- 답변요지(이춘기 총무과장) : 한국전력의 판단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지원되며 L.N.G로 대체에너지 시행이후 '94년도는 지원금 없음.
- 질의요지(이봉형 위원) : 지원금이 없을 경우 본조례의 제정이 필요한가?
- 답변요지(이춘기 총무과장) : 지원금이 있을 경우를 대비 제정코자 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390

제출년월일 : 1995년 4월 7일
제 출 자 : 마 포 구 청 장

1. 제정이유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지원금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제정 주요골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안 제3조)
- 세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및 그 수익금으로 함.(안 제4조)
-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함.(안 제5조)
-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가능토록 규정함.(안 제6조)

3.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5. 1. 5. 법률 제4877호) 제15조, 제117조제2항
- 지방재정법(1991. 12. 31. 법률 제4466호) 제5조제2항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1993. 12.

10. 법률 제4601호)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93. 3. 6. 대통령령 제13780호) 제21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필요성 : 특별회계 편성 조치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그 수익금으로 한다.

제5조(세출) 세출은 제2조 규정이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하되,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1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다.

제6조(이월사용)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7 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 8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

1995년 4월 12일

재해대책특별위원회

1. 목 적

94년 12월 7일 14시 50분경 아현동 606-6 도로공원에서 발생한 도시가스기지 폭발사고에 대하여 원만한 수습이 되도록 지원활동을 하며, 관내 도시가스와 관련된 위험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데 있음.

2. 활동근거

-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제2항·제3항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

3. 활동기간

- 94. 12. 14.(수)~95. 4. 12.(수)

4. 대상기관

- 마포구청(시민국)
- 관내 한국가스공사 경인관로사무소

5. 활동경과

가. 1994년 12월 8일 제2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제의로 11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명단

구 분	성 명	비 고
위원장	박 주 서	
간사	홍 길 표	
위원	김 동 휘, 김 상 열, 송 윤 석, 윤 정 용, 이 종 일, 이 천 규, 정 연 우, 조 회 태, 홍 성 환	
사무국	전문위원 김 전 재	
직원	의사계 오재형	

나. 위원회 개최

- 제1차 : 94. 12. 14.(수)
 -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
 - 2)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보고
 - 구청장 : 개괄 설명
 - 시민국장 : 질의·답변
 - 3) 아현동 가스기지 폭발 현장 및 소외국교 등 이재민 수용지역 방문
 - 사고수습·이재민 대책 보고받음(사고수습대책 상황실)
 - 사망자 조문 및 부상자 격려 방문 (세립간호 병원등)
- 제2차 : 95. 3. 3.(수)
 - 1) 아현동 도시가스 수습현황 보고(시민국장)
 - 2) 마포구청내 매설된 도시가스 시설 점검
 - 3) 한국가스공사 경인관로사무소 합정기지 방문
 - 도시가스 공급현황 보고 및 아현동 도시가스 사고 관련 설명 (서울분소공급과장 이재현)
 - 질의·답변